

2026년 제8회 여수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시
지방공기업상수도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2026년 8 월 31 일

여 수 시 장 서 매 역 

여수시 규칙 제882호

붙임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1부

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

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예정금액 5,000만원이하의 공사, 3,000만원이하”를 “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”로, “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”를 “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”를 “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, 「같은 법시행령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,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”를 “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, 「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, 「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여수시 물품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1.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

제6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제7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을 비치해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계약체결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업출납원에게 위임된 범위에서 진행 중인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예산집행품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예산집행품의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물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관리자의 직무위임)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.	제3조(관리자의 직무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예정금액 5,000만원이하의 공사, 3,000만원이하의 용역·제조·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,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</u>	3. <u>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-----</u> ----- ----- <u>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</u> -----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5.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<u>예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</u>	5. ----- -- <u>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</u> ----- -----
6. 7. (생략)	6. 7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준용규정)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,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 <u>같은법시행령</u> 」 및 「 <u>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 관한 훈령</u> 」,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	제4조(준용규정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및 같은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, 「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,</u>

를 준용한다.

제28조(예산의 집행품의) ① 관리자는 각 과장에게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예산금액이 3,000만원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,500만원이하의 제조·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

2.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이하의 집행사항
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68조(지정금융기관의 구분) ① (생략)

제73조(장부의 비치) ①·② (생략)

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.

1. 세입금내역장

④ (생략)

「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여수시 물품관리 조례」 -
---.

제28조(예산의 집행품의) ① -----

-----.

1. 건당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

<삭제>

2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8조(지정금융기관의 구분) (현행 제1항과 같음)

제73조(장부의 비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세입금내역장을 비치해야 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